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1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정보전산원), 02-970-9052

제정 2012. 3. 1.

개정 2014. 2.27.

타규정개정 2015. 6. 5.

개정 2018. 2. 5.

개정 2019. 3. 5.

학칙개정 2021. 10. 1.

개정 2022. 9.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 전산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개 정 2021. 10. 1.>

제2조(직무) 정보전산원은 대학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대학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 2. 교육, 연구, 행정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지원
- 3. 학사, 행정, 부속기관 업무 정보화 및 유지 관리
- 4. 입학전형 전산처리 지원
- 5. 주전산기 및 전산망 구축 운영

- 6. 공용 SW 도입 및 관리
- 7. PC 등 기타 정보자원 이용 지원
- 8.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정보보안
- 9. 기타 대학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 제3조(정보전산원장) 정보전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전산원 운영 및 대학 정보화를 총괄 조정하는 정보화책임관(CIO)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설치)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위회를 둔다.
-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 정보화 기본 계획
 - 2. 정보전산원 연간 운영 계획 및 결과
 - 3. 학사, 행정 및 부속기관 업무 시스템 개편
 - 4. 교육 및 연구용 S/W 운영지원
 - 5. 대학의 주요 정보화 관련 사업
 - 6. 기타 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반영한다.
-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삭제

제3장 운영

- 제9조(조직) ① 정보전산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산과장을 둘 수 있다.
 - ② 정보전산원에는 하부조직으로 정보화기획팀, 학사정보화팀, 일반 정보화팀 및 정보인프라팀을 둔다. <개정 2019. 3. 5.>
 - ③ 하부조직의 담당업무는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교육·연구사업) ① 정보전산원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교육 및 연구용역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정보전산원은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수강료 등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조(재정) 삭제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49호, 2012. 3.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1호, 2014.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3호, 2015. 6. 5.)

(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7호, 2018.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7호, 2019.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2호, 2022. 9.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